「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담당관)

가. 제안이유

❍ 「국민권익위원회」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을 이유로 한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, 후생복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장기근속을 이유로 한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근거 삭제: 안 제6조제9호

- (기존) 장기근속・모범・친절・우수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
- (개정) 모범・친절・우수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국내외 문화탐방의 지원 대상에서 장기근속 공무원을 제외하여,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임.

❍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‘지자체 장기근속·퇴직(예정)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’을 의결하고, 장기근속 또는 퇴직(예정)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게 국내·외 연수 등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음. 또한 장기근속·퇴직(예정)자에 대한 일괄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편성·집행을 제한하고, 관련 예산의 집행관리 및 공개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.

❍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개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6조제9호의 지원 대상 중 ‘장기근속’을 삭제하고, ‘모범·친절·우수공무원’에 대한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,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임. 이는 장기근속이라는 근무연수 자체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지원을 제외하고, 별도의 공적이나 성과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은 유

지하는 것으로서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또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의 후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정·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기존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며,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다른 후생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,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